

## 경인일보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공표(2017년 5월 ~ 2018년 12월)

[정정보도]'인천기초자치단체 과태료부과 폭증세' 보도 관련

경인일보는 지난 7월 11일자 3면에 '인천기초자치단체 과태료부과 폭증세' 제하의 기사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자료에 언급된 과태료는 경찰이 부과한 견수와 징수액으로, 인천 남동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광주시 갤러리아플라자, 조건부 매매약정 '위법' 관련 반론보도]

본 신문은 지난 2017년 9월 25일 자 '광주 오피스텔 땅 없이 사전분양?', 2017년 10월 2일자 '갤러리아플라자, 조건부 매매약정 '위법'', 2017년 10월 19일 '국토부 '불법 사전분양' 판단 아랑곳 갤러리아플라자, 계약금 반환 거부' 각 제목의 기사에서, 광주시가 분양신고도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분양한 혐의로 갤러리아플라자 시행사인 갤러리아건설을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도 허가 관청에 분양신고 없이 '조건부매매약정서'로 오피스텔 계약금을 미리 받은 것은 사전분양으로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갤러리아건설은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부동산신탁회사와의 분양관리신탁 계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갤러리아건설은, 해당 사업은 토지주와 오피스텔 건립을 공동개발하기로 사전 협의 약정하고 추진해 온 것이므로, 시행사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신탁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조건부매매약정서로 계약금을 미리 받은 행위가 사전분양으로 위법하다는 보도는 국토교통부 담당 주무관의 의견일 뿐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인터뷰 내용 및 사진 수정 요청]에 대한 처리

'사랑과 희망의 피그말리온센터 운영선 전문상담사' 인터뷰 기사와 관련, 당사자로부터 인터뷰 내용에 사용된 센터 대표 전화번호 수정요청 및 개인정보 노출 부분에 대한 수정 및 삭제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요청 사항대로 고충 처리.

[반론보도문]'부서관 성희롱' 상사 징직처분 정당 판결 기사 관련

본지는 지난 11월 3일자 사회면(1판 18면)과 인터넷신문에 "'부서관 성희롱' 상사 징직처분 정당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부대 소속 여자 부서관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A상사에 대한 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상사는 "법원은 당초 A상사에게 인정되었던 5가지의 징계혐의 사실 중 3가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원고인 A상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희롱이나 품위유지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본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1심으로 A상사가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 경인일보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공표(2017년 5월 ~ 2018년 12월)

['광명시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감사' 관련 반론보도문]

본보는 2018년 5월 30일자 「입찰 '입맛대로'...미달업체 밀어준 광명시 공무원」, 6월 1일자 「EBS 진로포털 운영사 '저작권 침해 의혹' 檢 조사」 제목의 각 기사에서 광명시 자체 감사 결과, 광명시가 수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단독 입찰한 업체가 기준 미달인데도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나 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원저작자 송영선 씨에서 약속한 주식(주식 비율 54%)을 지급하지 않고 특허·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광명시의 감사가 진행됐으나 결과는 확정된 바 없고 광명시와의 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업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원저작자 송 씨의 고소사건에 대한 조사일 뿐이고, 해당 업체는 원저작자 송 씨에게 특허·저작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약정한 41%의 주식을 지급했으며 주주명부를 위조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송 씨를 배제한 적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공장시설에 대안학교 불법 운영' 관련 반론보도문]

본보는 2018. 6. 21. 자 「특정 종교단체 '공장시설에 대안학교' 불법 운영」 제목의 기사에서 특정 종교단체가 학부모들에게 미인가 시설임을 고지하지 않은 채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미취학 아동부터 초·중·고생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원의 수업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종교단체는 학생을 모집할 당시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임을 학부모에게 고지했고, 위 보도의 '수백만 원의 수업료'는 매월 수업료가 아니며, 수업료는 매월 미취학 아동 46만원, 초등학생 48만원, 중고등학생 50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